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4월 22일

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
요구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 제도 운영상에
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
유도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숙박비 현실화를
통해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
(별표 1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조정하는 등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」 [별표1]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반영하고,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맞추어 여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비집행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여비 지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